

1. 개정이유

- 가.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검토 사항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
- 나.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,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두어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도록 하려는 것임
- 다. 시행령 제116조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,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실무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
- 라.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요구에 따라 사업주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(7월 1일 시행 예정)에 따라,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(법 제116조제2항 관련)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
- 마.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맞는 청력검사를 위한 특진의뢰 시 특진 의료기관 부족 등으로 청력검사 대기기간 발생 및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, 특진의료기관을 확대하고자 함
- 바.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(7월1일 시행 예정)에 따라,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시행령 제77조를 삭제하되, 개정령 시행 이전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

2. 주요내용

- 가.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검토 사항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(안 제8조)
- 나.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(안 제8조의4)
- 다. 시행령 제116조(보고·제출요구)의 문구를 법 '제114조부터 제118조에'로 개정하여 동 규정이 법 제114조~118조에 적용됨을 명확히 함(안 제116조)
- 라.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'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자료'를 규정(안 제116조의2)
- 마.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대상을 근로복지공단병원,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에 더해 병·의원까지 확대하되, 청력검사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상 의료기관은 인력·시설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제한(안 제118조제1항제4호)
- 바. 시행령 제77조(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) 전부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관한”을 “관한 사항 및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”으로 한다.

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4(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) 공단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둔다.

제77조를 삭제한다.

제116조 중 “및 법 제118조”를 “부터 제118조”로 한다.

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6조의2(사업주의 조력) 법 제116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「근로기준법」 상 근로계약서 등 임금, 소정근로시간,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자료
2. 출퇴근 기록 등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
3.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8조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등 작업지시, 직무기술, 작업공정에 관한 자료

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등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에 관한 자료
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자료
6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조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669조 제1호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자료
7. 「근로기준법」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 등에 관한 자료

제1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중 공단이 정한 시설요건 등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. 이 경우 별표3 제7호차목의 소음성 난청 판단을 위한 진찰에 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) 제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, 이 영 시행 이전에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전문위원회) ① (생략)	제8조(전문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: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·적용·징수·급여·재활 및 복지에 <u>관한</u> 사항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한 사항 및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</u> ----- -----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⑧ (생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제8조의4(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)</u> 공단은 <u>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둔다.</u>
제77조(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)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	제77조<삭제>

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제116조(보고·제출요구) 법 제114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16조(보고·제출요구) -----
---부터 제118조-----

-----.

제116조의2(사업주의 조력) 법 제116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「근로기준법」상 근로계약서 등 임금, 소정근로시간,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자료
2. 출퇴근 기록 등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
3.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8조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등 작업지시, 직무기술, 작업공정에 관한 자료
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등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에 관한 자료
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9조

제118조(특진의료기관)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진찰(이하 이 조에서 “진찰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(이하 “특진의료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~ ⑤ (생략)	<u>부터 제131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자료</u> 6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조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669조 제1호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자료 7. 「근로기준법」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 등에 관한 자료 제118조(특진의료기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중 공단이 정한 시설요건 등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. 이 경우 별표3 제7호차목의 소음성 난청 판단을 위한 진찰에 한한다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

